

#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모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stimation Model of Construction Duration for Public Construction

김 병 수\* · 전 진 구\*\*

Kim, Byeong Soo\* · Chun, Jin Ku\*\*

### 요약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관청에서 산정한 예정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예정준공일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공사지연에 따른 시공 중 문제점뿐만 아니라 시설물 사용 계획의 차질로 초래되는 물류비용증가, 시민불편가중, 시설물을 이용한 생산 및 공급차질과 이로 인한 각 분야의 막대한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손실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시 산정하는 예정공사기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발주관청의 예정공사기간 산정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기간보정요소를 포함하는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을 제시하여 적정공사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시공 중의 공기연장 비도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공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키워드 :** 예정공사기간, 공사기간산정모델, 공기연장, 공사기간보정요소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공공 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관청에서 산정한 예정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예정준공일보다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는 공사 중의 원인 외에 예정공사기간 산정기준의 비정형화와 이것으로 인한 발주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기지연은 공사의 지연에 따른 시공 중 문제점뿐만 아니라 시설물 사용 계획의 차질로 초래되는 물류비용증가, 시민불편가중, 시설물을 이용한 생산 및 공급 차질과 이로 인한 각 분야의 막대한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손실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기지연요소를 제거 할뿐만 아니라 발주시 산정하는 예정공사기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발주관청의 예정공사기간 산정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을 제시하여 적정공사기간을 확보함으로서 시공 중의 공기연장 비도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공공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지방관리청, 도로공사, 토지공사 및 지하철건설본부 등 발주관청의 예정공사기간 산정절차를 조사하고, 발주시 정한 예정공사기간과 실제공사기간의 차이발생의 정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기간과 관련한 제반현황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공기산정시 고려되는 인자를 기준문헌을 통해 조사·분석하고,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을 개발하여 검증함으로써 공기산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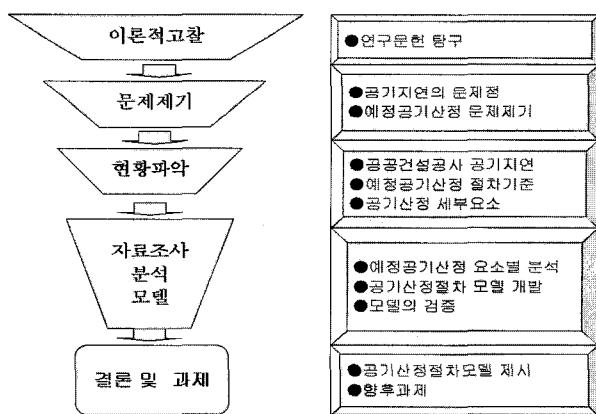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일반회원, 국립상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bskim@sangju.ac.kr

\*\* 일반회원, 삼안기술개발연구원, 부장, 공학박사(교신저자),  
jkchun@samaneng.com

## 2. 기존연구고찰

공사기간 산정에 관한 기존연구는 민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거푸집준치기간, 공사규모, 강도발현율, 기술인력의 노동생산성 등 단위작업물량에 대한 표준 작업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강우일수, 일평균기온, 습도 등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요소를 분석하여 전체공사기간 중 연간 작업불가능일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중 기후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공기영향요인을 양생기간, 거푸집준치기간 등의 확정요인과 설계변경, 천재지변, 기온 등의 불확정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중 자연적 요인에 의한 작업불가능 기준을 제안한 연구가 있으며(최인환 외 1인, 1999) 공기영향 요소 중 기온, 강우, 바람 그리고 낮 시간을 기후요건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으며, 공기산정 시 기후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공기산정방법보다 24일정도 공기단축이 가능하다고 한 연구가 있다.(구해식 외 1인, 1999)

이외에 지하철공사와 같은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예정공사기간 산정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시공 중 공정관리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로서 공기영향요소를 안전시공요소, 토지 및 영업권보상요소, 문화재요소, 동시건설요소, 지장물 요소 및 교통처리요소, 천재지변요소, 국내외 주요행사요소로 들고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신종웅 외 1인, 1996), 공사준비 단계의 미흡을 공기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한 연구로서 공사기간의 증가원인을 조사하여 발주시점에서의 현장조사미흡으로 인한 공사량 증가, 작업용지 선정 및 강재반입지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관련 방침지연 등으로 규정하고 발주 시 준비과정의 소홀이 공기

연장의 큰 원인이라고 한 연구가 있다.(손창백 외 2인, 1999)

또한, 공사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률적요소로 규정하고 공사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강우와 기온 등 외부적 확률요소를 몬테카를로 모의조작기법으로 수행하여 공정계획 모듈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강인석 외 4인, 2000)

그러나 기존연구는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공사기간 산정절차를 모델화 하여 이를 공사 발주시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 완성기간에 대한 신뢰성을 기대하기는 부족하며, 또한 공사기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예정공사기간 산정기준 설정이나 발주시 공기산정자료 공개 등과 같은 공기산정절차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예정공사기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공기산정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 3. 예정공사기간 현황 및 문제점

### 3.1 예정공기 현황

공공 건설공사 발주시 예정공사기간은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그러나 각 발주처별 공기산정기준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은 별도의 산정기준 없이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공사규모, 공사특성,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나마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표1.에서와 같이 기후조건에 따른 공사불능일을 각 지역별로 정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한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하고는 있으나 설계자의 판단에 따른 가감과 민원, 현장여건 등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 경우 주관적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

표 1. 한국토지공사 단지조성설계 및 적산기준

A. 사업규모별 순공사기간(A)		B. 동절기 공사종단기간(B)(년간)			C. 우기 공사종단기간(C)(년간)			D. 혹서기 공사종단(D)(년간)		
사업규모	순공사기간	구분	해당지역	중단일수	해당지역	중단일수	비고	해당지역	300이상일수	적용일수
5만평 이하	400일 이내	1급 지역	강원 영서(인제, 홍천, 춘천)	95일	경기 일원	45일		경기일원	23일	11
5~10만평	550일 이내	2급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영서, 남부(원주), 충북, 충남일부(천안)	80일	강원 일원	50일	춘천: 40일	강원 일원	23일	11
10~20만평	650일 이내	3급 지역	충남, 전북일주(전주, 익산), 경북일주(상주, 영주)	60일	충남, 충북 일원	45일		충남, 충북 일원	36일	18
20~30만평	720일 이내	4급지역	전북, 전남일부(광주), 경북내륙(안동, 구미, 대구, 영천)	40일	경남, 경북 일원	45일	포항, 울산: 40일	경남, 경북 일원	30일	15
30만평 이상	730일 이상		경남내륙(진주), 강원 영동		제주, 전남, 전북일원	50일	군산: 40일	제주, 전남, 전북일원	29일	14
		5급 지역	전남해안(목포, 나주, 강진, 순천, 여수), 경남 해안(종무, 창원)	20일				E. 공휴일 휴지일수(E)		
			울산, 포항, 제주					년간 평균 공휴일수(65) × 휴지계수(0.5) = 32일		

1) 한국토지공사 단지조성설계 및 적산기준, 2004.

표 2. 도로 및 기타공사 예정공기와 실적공기 사례 표3. 지하철공사 예정공기와 실적공기 사례

번호	현장명	최초착공	최초준공	공기	최종착공	최종준공	공기	(지연일수)
1	도로-1	19911231	19951231	4년	19911231	20021130	10년11월	6년11월
2	도로-2	19940707	19990206	4년7월	19911231	20011030	9년10월	5년3월
3	도로-3	19971231	20030531	5년5월	19971231	20030920	5년8월20일	3월20일
4	도로-4	19941028	19981231	4년2월3일	119941028	20001231	7년2월3일	3년
5	도로-5	19961231	20011030	4년10월	19961231	20031231	7년	2년2월
7	도로-6	19951230	19991230	4년	19951130	20021219	6년11월19일	2년11월19일
10	도로-7	19970604	19981003	1년4월	19970604	20000406	2년10일	1년6월
11	도로-8	19951130	19990730	3년8월	19951130	20001231	5년1월	1년5월
13	도로-9	19960401	19991231	3년9월	19960401	20010228	4년11월	1년2월
14	도로-10	19970526	19990214	1년10월18일	19970526	20000430	3년18일	1년2월
21	도로-11	19990927	20010927	2년	19990927	20020724	2년10월	10월
27	도로-12	19980807	20011231	3년4월24일	19980807	20020221	3년6월14일	1월20일
29	도로-13	19990213	20040212	5년	19990213	20010228	5년	-
30	도로-14	19980430	20030430	5년	19980430	20011231	5년	-
31	도로-15	19961227	20011226	5년			5년	-
32	도로-16	19971225	20021225	5년	19971225	20021225	5년	-
34	도로-17	19991009	20011012	2년3일	19991009	20011008	2년3일	-
22	도로유관관로-1	20001110	20021331	2년1월21일	20001110	20030731	2년8월21일	7월
23	도로유관관로-2	20000726	20011231	1년5월5일	20000726	20020724	2년5일	7월
8	과학단지-1	19961231	19990624	2년5월24일	19961231	20001230	3년11월24일	1년6월
12	과학단지-2	19970424	20000627	3년2월3일	19970424	20011114	4년6월18일	1년4월15일
24	과학단지-3	19971128	20010505	3년5월9일	19971128	20011114	3년11월17일	6월9일
19	골프장-1	19970716	20001231	3년5월15일	19970716	20011130	4년4월15일	11월
20	골프장-2	19970716	20001231	3년5월15일	19970716	20011130	4년4월15일	11월
6	전력구-1	19980305	20000323	2년18일	19980305	20020430	4년1월18일	2년1월
26	전력구-2	20000728	20011231	1년5월3일	20000901	20020430	1년9월3일	4월
17	고속철도	19990521	20020720	3년2월	19990521	20021111	3년5월21일	3월21일
33	터널	19981014	20021014	4년			4년	-
28	장대교량	19931118	20001231	7년1월13일	19931118	20001231	7년1월13일	-
35	정수처리시설	20001202	20011220	1년18일	20001202	20011219	1년18일	-
9	하수처리장	19971222	19991221	2년	19971222	20010621	3년6월	1년6월
18	공단조성	19970424	20000123	2년9월	19970424	20000423	3년	3월
15	저수지	19920415	20021230	10년8월15일	19920415	20031230	11년8월15일	1년
16	부두건설	20001128	20030527	2년6월	20001128	20021226	2년1월	-5월
25	LPG수입저장시설	19961230	19991130	2년11월	19961230	20000531	3년5월	6월

문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못하고 실제공사기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예정공기와 실제공기의 차이는 실적공사를 조사분석한 결과 표2.와 표3.과 같이 도로 및 기타 공사와 지하철공사를 사례로 보면 대개 1~2년의 공기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발생의 원인으로는 토지보상지체, 발주처예산배정의 문제, 예년과 다른 기후조건의 변화와 같이 공사여건의 변동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사되었다.

공기연장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표 4.에서와 같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3항의 각호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sup>2)</sup> 즉 연장을 할 경우에는 자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의 공기연장

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시 발주관청에서 제시한 공기가 절대적 기준이 되므로 상기의 조건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이라 할지라도 추가간접비는 시공사부담으로 유도하고 있다.<sup>3)</sup>

이는 법 규정의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는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공사기간의 연장을 자체상금을 부담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느냐가 판단되어져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을 객관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지하철이나 도로공사 등 공공시설 건설공사가 발주처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추가간접비의 지급은 극히 미미하다.

표 3. 지하철공사 예정공기와 실적공기 사례

공구별	연장(m)		예정공사기간			실적공사기간		지연일수
		착공일	준공일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	공사기간	
지하철-1	480	96.11.27	00.11.5	3년11월8일	96.11.27	04.12.31	8년1월3일	4년1월25일
지하철-2	570	97.12.23	01.12.1	3년11월9일	97.12.23	04.12.31	7년8일	3년3월
지하철-3	1,564	97.3.28	01.3.3	3년11월5일	97.3.28	04.12.31	7년9월3일	3년10월28일
지하철-4	1,320	97.3.28	01.3.3	3년11월5일	97.3.29	04.12.31	7년9월2일	3년10월27일
지하철-5	1,360	97.3.29	01.3.3	3년11월5일	97.3.29	04.12.31	7년9월2일	3년10월27일
지하철-6	1,304	97.3.27	01.3.6	3년11월10일	97.3.27	04.12.31	7년9월4일	3년10월24일
지하철-7	1,465	97.3.27	01.3.8	3년11월10일	97.3.27	04.12.31	7년9월4일	3년10월24일
지하철-8	1,809	97.4.1	01.3.11	3년11월10일	97.4.1	04.12.31	7년9월	3년10월20일
지하철-9	1,020	97.3.21	01.2.28	3년11월10일	97.3.21	04.12.31	7년9월10일	3년10월20일
지하철-10	1,300	97.3.10	01.2.16	3년11월8일	97.3.10	04.12.31	7년9월20일	3년10월18일
지하철-11	1,280	97.4.4	01.3.14	3년11월10일	97.4.4	04.12.31	7년8월26일	3년10월16일
지하철-12	2,740	97.1.16	02.1.15	5년	97.1.16	04.12.31	7년11월15일	2년11월15일
지하철-13	2,760	97.1.16	02.1.15	5년	97.1.16	04.12.31	7년11월15일	2년11월15일
지하철-14	2,100	97.1.16	02.1.15	5년	97.1.16	04.12.31	7년11월15일	2년11월15일
지하철-15	2,700	97.1.16	02.1.15	5년	97.1.16	04.12.31	7년11월15일	2년11월15일
지하철-16	1,142	92.12.24	96.12.30	4년6일	92.12.24	98.10.16	5년9월22일	1년9월
지하철-17	1,320	91.11.18	96.03.30	4년4월12일	91.11.18	97.11.30	6년12일	1년8월
지하철-18	1,590	91.11.16	96.03.30	4년4월4일	91.11.16	97.11.30	6년14일	1년8월
지하철-19	1,590	91.11.18	96.03.30	4년4월12일	91.11.18	97.11.30	6년12일	1년8월
지하철-20	1,618	91.11.16	96.03.30	4년4월14일	91.11.16	97.11.30	6년14일	1년8월
지하철-21	1,400	91.11.19	96.03.30	4년4월11일	91.11.19	97.11.30	6년11일	1년8월
지하철-22	1,490	91.11.18	96.03.30	4년4월12일	91.11.18	97.11.30	6년12일	1년8월
지하철-23	1,114	92.12.21	96.12.30	4년9일	92.12.21	98.5.30	5년5월9일	1년5월
지하철-24	1,719	92.12.22	96.12.30	4년8일	92.12.22	98.5.30	5년5월8일	1년5월
지하철-25	1,263	92.12.24	96.12.30	4년6일	92.12.24	98.5.30	5년5월6일	1년5월
지하철-26	1,719	92.12.24	96.12.30	4년6일	92.12.24	98.5.30	5년5월6일	1년5월
지하철-27	936	92.12.18	96.12.30	4년12일	92.12.18	98.5.30	5년5월12일	1년5월
지하철-28	1,460	92.12.28	96.12.30	4년2일	92.12.28	98.5.30	5년5월2일	1년5월
지하철-29	1,205	92.12.28	96.12.30	4년2일	92.12.28	98.5.30	5년5월2일	1년5월
지하철-30	1,415	92.12.22	96.12.30	4년8일	92.12.22	98.5.30	5년5월8일	1년5월
지하철-31	2,360	92.12.26	96.12.30	4년4일	92.12.26	98.5.30	5년5월4일	1년5월
지하철-32	1,725	98.8.25	02.8.24	4년	98.8.25	04.12.31	6년4월6일	1년4월6일
지하철-33	2,860	98.8.25	02.8.24	4년	98.8.25	04.12.31	6년4월6일	1년4월6일
지하철-34	785	92.9.23	96.11.30	4년2월7일	92.9.23	98.3.30	5년6월7일	1년4월
지하철-35	1,626	92.10.5	96.11.30	4년1월25일	92.10.5	97.11.30	5년1월25일	1년
지하철-36	720	93.7.15	97.7.30	4년15일	93.7.15	98.5.30	4년10월15일	10개월

표 4. 공기지연시 지체일수 불산입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내 용
제25조 3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li> <li>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li> <li>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li> <li>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li> <li>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li> <li>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 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li> <li>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li> </ol>

### 3.2 공사기간과 관련한 문제점

상기와 같은 법 규정의 모호와 예정공기산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계약 공기와 실제공기의 차이발생
- 시공중 공기연장시 예산확보의 어려움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설계변경 어려움으로 인한 시공자 자부담으로 유도
- 공정계획의 부적정
  - 짧은 공사기간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공정계획 수립
  - 공사기간 막바지에 돌관작업으로 인한 직접공사비 증가 및 품질화보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 공사기간 연장시 발주처와의 관계악화 및 행정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간낭비
- 공사기간 연장시 감리비 및 감리원 확보의 어려움
-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관련 클레임 증가
-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중지지시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하철공사의 경우 예정공기가 최소 7~8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6년만 책정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신종웅 외 1인, 1996), 공사기간의 증가로 인한 시공자의 원가손실액이 연간 391.2백만원으로(손창백 외 2인, 1999) 공사발주시 예정공기의 정확성 결여로 인한 원가 및 품질문제가 심각한 실정인 것을 알 수 있다.

## 4.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

### 4.1 예정공사기간 산정요소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기준연구문헌과 실제 현장에서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크게 직접요소와 간접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접요소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간접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직접요소 : 양생기간, 거푸집존치기간, 공사규모, 운반거리, 장비·인력투입규모

○간접요소 : 자연환경, 용지보상율, 문화재발굴, 지장물, 교통환경, 민원, 발주유형

#### 1)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공기영향 요인으로서 강우일수, 기온, 낮시간 등의 일반기후와 천재지변과 같은 이상기후로 구분할 수 있다.

천재지변은 예정공기 산정시 고려하기 힘든 요소로서 공사중 태풍, 집중호우 또는 비이상적인 장기강우 등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를 말하며 일반기후를 벗어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기후는 예정공기 산정기준에서는 일단제외하고 공기연장 가능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으로 이상기후 요소로 인한 공기연장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기후요소 중 공사기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강우일수와 기온요소를 예정공기산정기준에 편입시키고 낮시간은 구해식의 연구에서 '전지역 월별 낮시간 보정일수'의 합이 평균 -0.03으로<sup>4)</sup>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므로 제외하되 일부 산간지방에서 작업시 일출일몰시간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곳은 예외적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자연환경요소 적용여부는 표 5.와 같다.

표 5. 자연환경요소 적용여부

구분	항목	적용여부
1. 이상기후요소	태풍, 집중호우 등	미적용
	강우량, 강우일수	적용
2. 일반기후요소	기온	적용
	낮시간	미적용
	혹서기	예외적 적용

#### (1) 강우량 및 강우일수

작업불가능 강우량은 5mm이상 또는 10mm이상을 작업불가능 강우량으로 보았지만 강우량만 가지고 작업의 가능-불가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작업현장의 여건과 공종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토사성토공종이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 강우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토사의 특성상 비가 온 후 1~2일 정도는 노상을 말려야 장비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하루 중 강우의 시기에 따라 작업가능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오전에 비가 오면 작업자들이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은 작업이 불가능하다. 반면에 오후에 비가 오면 비의 양과 시간에 따라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장의 작업일보를 보면 '비온후 갱'으로 표기된 날은 작업이 없었고 '흐리고 비'로 표기된 날은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강우특성에 따른 작업 불가능강우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구지역의 지하철2호선공사현장 중 우천의 영향을 받는 외부작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작업일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지일이 표6.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표 6. 대구지하철현장 작업일보분석(1)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작업중지 일수	43	29	38	68	36
우천으로 인한 중지일수(A)	36	25	30	49	29
10mm이상 우천으로 인한 중지 일수(B)	33	24	30	47	28
차이(A-B)	3	1	0	2	1

표6.에서 우천으로 인한 작업중지 일수와 10mm이상 중지일수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8mm~9mm의 강우가 오전에 집중되어 작업 중지 된 것이며 나머지 작업중지일은 자재조달문제, 설계변경지연, 작업자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 및 우천으로 인한 익일 토공사중지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

4) 낮시간 보정은 월별 일수 대비 낮시간을 보정한 것으로서 서울(-0.03), 강릉(-0.01), 대전(-0.04), 광주(-0.04), 대구(-0.03), 부산(-0.04)지역의 월별 낮시간 보정일수의 전체평균이다.

서 작업불가능 강우량은 일 10mm이상인 날로 하였다. 강우량 및 기온요소의 적용기준은 표7과 같다.

표 7. 강우량 및 기온 적용기준

구분	항목	적용기준
1. 강우량	강우일수	10mm이상
2. 기온	동절기 혹서기	일 최저기온 0°C이하 일 평균기온 25°C이상 실제는 미적용

## (2) 기온

기온은 동절기 작업중지와 혹서기 작업 불가능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보면 동절기 작업중지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진영섭의 연구는 일 평균기온 4°C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 대한토목학회 그리고 일본토목학회는 일 평균기온 4°C 이하일 때 한중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인환은 일 평균기온 0°C이하일 때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작업불가능 기온에 대한 규정이 각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평균기온의 개념은 콘크리트의 양생특성을 감안하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평균기온은 최저와 최고의 평균이므로 콘크리트의 어는점을 보정한 한중콘크리트를 타설 하더라도 일 기온차가 큰 경우 동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기온은 일 최저 기온으로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한중콘크리트 타설을 감안하여 일 최저기온 0°C이하를 작업중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혹서기 작업중지기간 산정에서 최고기온 혹은 평균기온은 품질관리 측면과 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품질관리 측면은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균열을 우려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살수양생을 하는데 이 경우 기온이 너무 높으면 품질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전관리 측면은 작업자의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우려하여 차양막의 설치, 물이나 소금지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표 8. 대구지하철현장 작업일보분석(2)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7~8월 작업일수(A)	45	51	44	40	50
10mm이상 강우 일수(B)	14	7	16	19	11
평균기온 25°C 이상일수	53	52	35	19	41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일 평균기온 25°C 이상을 작업 불가능 기준으로 설정하였지만 실제 작업일보를 조사한 결과 혹서기로 인한 작업중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8은 최근 5년간 대구지하철 작업일보 중 7~8월 2개월간의 자료로서 평균기온 25°C 이상 일수가 2000년의 경우 53일씩이나 되지만 작업중지 일수는 강우로 인한 중지 외에 대부분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혹서기로 인한 작업중지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부분의 경우 작업자의 능률저하 및 품질 및 안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지만 혹서기 2개월과 동절기 2개월을 모두 작업중지일로 설정한다면 각종 비작업일을 포함한 1년중 비작업일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므로 혹서기 작업능률향상 및 품질,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작업준비요소

작업준비요소로서 용지보상율, 문화재발굴, 지장물, 교통환경, 민원, 발주유형 등을 공기영향요인으로서 정할 수 있다.

### (1) 용지보상율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지보상율과 관련하여 2002년 제정되고 2003년부터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사전보상)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발주시 용지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채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않고 발주시 용지보상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공사기간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개인을 상대로 하는 용지보상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다는게 불가능하며, 시공자에게 용지보상을 맡겨야 하는 경우 별도의 용지보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공사기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용지보상용역계약기간의 산정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용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주보류로 적용기준을 설정한다.

### (2) 문화재 및 지장물

문화재와 지장물은 공사 발주전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전인식의 경우는 발주전에 공사기간에 포함할지 아니면 선 조치후 공사를 착공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인식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 중 발견되는 경우 공사는 중지 되어야 하며 시공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발주처 부담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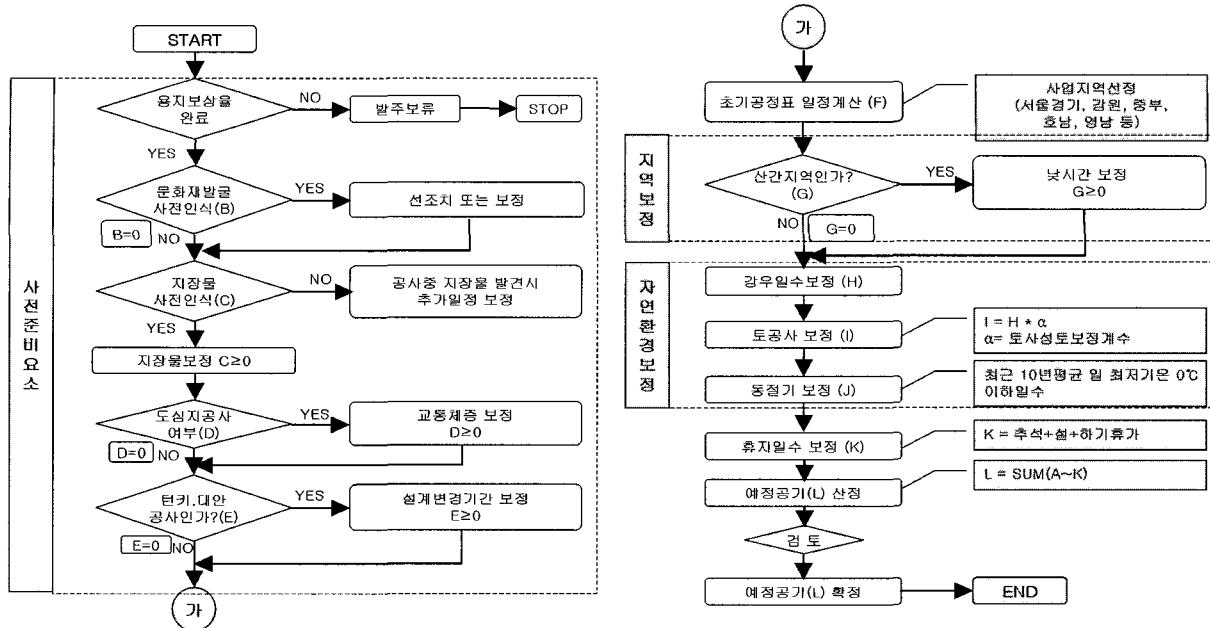


그림 2.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

### (3) 교통환경 및 민원

공공 건설공사 중 지하철은 대부분 도심지공사로 진행되며, 도로공사는 시외곽에서 진행되므로 지하철과 도로공사의 교통 환경은 차이가 있다. 도심지 중에서도 교통체증이 심한 곳과 심하지 않은 곳의 차이도 크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관한 연구는 없으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콘크리트 타설량 대비 타설일수를 기준으로 지역일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례는 어느 현장에서나 있어 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환경법에 의한 작업장 주변환경 즉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의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예정공기 산정시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민원에 의한 공사지연요소는 불산정요소로 간주하여 산정절차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 (4) 발주유형

우리나라의 현재 발주유형은 크게 최저가입찰, 턴키 및 대안입찰, 사전심사제와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턴키 및 대안입찰로 시행하는 공사는 설계를 시공자가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어렵고<sup>5)</sup> 설계변경시 설계자의 의견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표 9. 작업준비요소 적용기준

구 분	내 용	적용기준
1. 용지보상률	발주전 전액보상원료	미원료시 발주보류
2. 문화재발굴	사전인식	선조치 또는 보정
3. 지 장 물	사전인식	선조치 또는 보정
4. 교통환경	교통체증 지역	지역에 따라 보정
5. 민 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미적용
6. 발주형태	터키, 대안공사	설계변경기간 보정

행정처리시간이 과다하여 공사진행이 원활치 못한 특성이 있다. 상기의 작업준비요소의 적용기준은 표 9.와 같다.

### 4.2 공기산정모델개발

공사기간 산정모델의 각 단계별 결과값은 기존의 연구자료를 참조하거나 최근의 통계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지만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결과값이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기산정모델만을 제시하였다.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은 그림 2.와 같다.

모델은 크게 프로젝트 발주전 사전준비요소와 지역보정요소 그리고 자연환경보정요소로 나누어 표현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진행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용지보상률(A)과 문화재발굴(B)에 대해서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발주를 보류하거나 충분한 공기보정을 하도록 하여 무리한 발주로 인한 공기지연 및 클레임 발생원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장물(C)과 교통체증(D)에 대한 보정요소는 현장여건에 따른 보정요소이며, 턴키설계변경기간에 대한 보정요소는 턴키공사의

5)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은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요인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가함(회계예규, 2001)

설계변경 소요기간에 관한 연구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공정표일정계산(F)은 정상적인 Pert-CPM 계산으로 산정하여 지역보정(G)과 자연환경요소인 강우일수(H), 토공사(I), 동절기(J)보정을 실시한다. 자연환경요소 보정은 최근 10년간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토사성토보정계수  $\alpha$ 는 구체적인 계수산정법은 추가연구가 필요하지만 초기공정표일정에서 토사성토와 관련된 계수를 구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휴지일수(K)와 관련해서는 주5일제근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전기, 설비분야의 현장근로인력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므로 주5일제는 배제하고 명절과 하기휴가정도로만 반영하였다. 그러나 향후 주5일제와 관련한 실근로일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이 부분의 보정계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4.3 모델의 검증

공기산정보모델의 검증방법은 실적자료와 모델적용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모델내의 공기산정 요소중 사전준비요소는 프로젝트의 발주여부와 관계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모델의 검증에서 제외하고 발주후 초기공정표일정계산과 자연환경보정 및 휴지일수 보정을 통해 얻어지는 프로젝트 예정공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실적자료에는 용지보상미완료로 인한 공기지연일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인터뷰조사로 나타났으며 이를 모델공기와 비교할 보정변경공기 산정시 반영하였다. 따라서 표12.에서 보정변경공기(H)는 변경공기(E)에서 용지보상으로 인한 공사불능일수(G)를 감하여 산정하였다.

$$\text{보정변경공기}(H) = \text{변경공기}(E) - \text{용지보상불능일수}(G) \quad \text{식(1)}$$

검증에 사용될 대상 프로젝트는 토지공사의 대구 및 경북지방에서 발주된 택지개발사업현장 중 과거 10년간의 자료로 한정하며 순수 공사일정인 공정표 일정계산은 실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표1. 한국토지공사의 공기산정기준 중 'A.사업규모별 순공사기간'으로 하였으나 30만평 이상에 대한 순공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30만평 이상의 규모에서는 720일에 10만평 당 70일의 추가일수를 보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정은 모델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표10.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 10. 자연환경보정 및 휴지일수 조사결과

항 목	일수(년간)
1. 동절기 최저기온 0°C이하일수	72
2. 우기 10mm이상 강우일수	32
3. 토공사 보정일수	32*0.5=16
4. 공휴일 휴지일수	17

표 11. 강우후 작업지정일수 조사결과

년/월/일	강우량(mm)	일자	강우일수(누적)	강우후 작업 지정일수(누적)
2003-06-10	0	晴		
2003-06-12	30	雨	1	1
2003-06-13		晴		
2003-06-18		晴		
2003-06-19	75.5	雨	2	2
2003-06-20		구름조금		
2003-06-22	0	구름많음		
2003-06-23	13.5	雨	3	3
2003-06-26		구름많음		
2003-06-27	48.5	雨	4	4
2003-06-28	0.5	雨		3
2003-06-29		구름많음		
2003-07-03	61	雨	5	5
2003-07-04	3.5	雨		4
2003-07-05	35.5	雨	6	6
2003-07-06	56.5	雨	7	7
2003-07-07	2	雨		5
2003-07-08	0	晴		
2003-07-09	49.9	雨	8	8
2003-07-10	53.5	雨	9	9
2003-07-11	54	雨	10	10
2003-07-12	1.5	雨		6
2003-07-13	59	雨	11	11
2003-07-14		구름많음		7
2003-07-18	45	雨	12	12
2003-07-19	0.5	雨		8
2003-07-20	2.5	雨		
2003-07-21	0	晴		
2003-07-22	15.5	雨	13	13
2003-07-23	24	雨	14	14
2003-07-24	0	구름많음		9
2003-07-25	53.5	雨	15	15
2003-07-26		구름많음		10
2003-07-27	0	晴		
2003-07-28	3	雨		
2003-07-29	79.5	雨	16	16
2003-07-30		구름조금		11
2003-08-05		晴		
2003-08-06	0	구름조금		
2003-08-07	12	雨	17	17
2003-08-08		구름조금		
2003-08-09		구름조금		
2003-08-10	2	雨		
2003-08-11	14.5	雨	18	18
2003-08-17	2.1	雨		
2003-08-18	74	雨	19	19
2003-08-19	30.5	雨	20	20
2003-08-20	5	雨		12
2003-08-21	5	雨		
2003-08-25	20.5	雨	21	21
2003-08-26	0.4	雨		13
2003-08-27	14	雨	22	22
2003-08-28	0	구름조금		
2003-08-29		晴		
2003-09-30	10.4	雨	23	23
2003-09-31	5.5	雨		
2003-09-01	0.2	雨		
2003-09-02	13.5	雨	24	24
2003-09-03	15.5	雨	25	25
2003-09-04	0	晴		14
2003-09-05	4	雨		
2003-09-06	23.5	雨	26	26
2003-09-09	24.5	雨	27	27
2003-09-10	0	晴		
2003-09-11	3	雨		15
2003-09-12	189.5	雨	28	28
2003-09-13	9.5	雨	29	29
2003-09-14		구름조금		16
2003-09-18	1	雨		
2003-09-19	11	雨	30	30
2003-09-20	0	晴		
			30	30

자연환경보정요소 중 강우일수 및 동절기 보정은 대구 및 경북지역의 과거 10년간 강우일수 및 최저기온 0°C이하일수를 기상청홈페이지(6)에서 조사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며 토공사보정의 토사성토보정계수  $\alpha$ 는 계수산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대구지하철 2호선 차량기지 성토작업과 관련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강우가 연속될 경우와 강우일후 비작업일 등을 고려할 때 계수  $\alpha$ 는 강우일수의 50%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11.은 강우로 인한 토공사 비작업일을

표 12. 공기산정모델 검증결과

구 분	면적 (평)	공사기간					공기지연		공기산정절차모델 적용 결과			
		착공일 (A)	최초준공 예정일(B)	변경준공일 (C)	당초공사 기간(D)	변경공기 간(E)	공기 지연(F)	용지보상 시공불능 일(G)	보정변경 공기(H)	모델 공기(I)	차이 (H-I)	차이율 (%)
택지개발사업-1	200,909	94-10-20	96-10-19	97-01-31	730	834	104	25	809	883	-74	-8%
택지개발사업-2	273,333	94-10-20	96-10-19	97-05-31	730	954	224	68	886	962	-76	-8%
택지개발사업-3	99,394	01-05-11	03-05-10	03-08-30	729	841	112	105	736	755	-19	-2%
택지개발사업-4	473,939	96-06-05	99-06-04	99-10-30	1,094	1,242	148	133	1,109	1,111	-3	0%
택지개발사업-5	77,450	00-07-03	02-06-19	02-06-19	716	716	0	0	716	709	7	1%
택지개발사업-6	222,333	95-12-26	98-08-31	98-09-30	979	1,009	30	85	924	915	9	1%
택지개발사업-7	568,588	96-04-02	00-02-25	00-07-15	1,424	1,565	141	285	1,280	1,254	26	2%
택지개발사업-8	158,788	97-08-20	00-02-19	00-05-10	913	994	81	145	849	836	13	2%
택지개발사업-9	183,333	97-09-18	00-03-17	00-04-30	911	955	44	69	886	870	16	2%
택지개발사업-10	678,554	96-01-23	00-12-31	01-08-31	1,804	2,047	243	650	1,397	1,360	37	3%
택지개발사업-11	209,697	96-06-07	99-06-06	99-07-30	1,094	1,148	54	225	923	903	20	2%
택지개발사업-12	584,575	96-05-23	00-05-30	00-09-20	1,468	1,581	113	276	1,305	1,264	41	3%
택지개발사업-13	549,850	96-05-23	00-05-30	00-12-20	1,468	1,672	204	395	1,277	1,235	42	3%
택지개발사업-14	499,852	96-04-02	00-02-25	00-04-25	1,424	1,484	60	256	1,228	1,186	42	4%
택지개발사업-15	90,606	01-05-11	03-05-10	03-08-30	729	841	112	85	756	736	20	3%
택지개발사업-16	636,585	97-04-14	03-04-30	03-12-31	2,207	2,452	245	1,078	1,374	1,321	53	4%
택지개발사업-17	192,424	99-10-06	02-04-05	02-04-05	912	912	0	0	912	882	30	3%
택지개발사업-18	447,851	96-05-23	00-05-30	00-09-30	1,468	1,591	123	402	1,189	1,139	50	4%
택지개발사업-19	654,869	97-04-14	03-04-30	03-12-31	2,207	2,452	245	1,056	1,396	1,331	65	5%
택지개발사업-20	695,682	97-04-14	03-04-30	03-12-31	2,207	2,452	245	1,005	1,447	1,379	68	5%
택지개발사업-21	625,878	97-04-14	03-04-30	03-12-31	2,207	2,452	245	1,085	1,367	1,302	65	5%
택지개발사업-22	525,485	95-06-23	00-03-31	00-10-31	1,743	1,957	214	678	1,279	1,215	64	5%
택지개발사업-23	566,545	96-01-19	99-12-31	00-09-30	1,442	1,716	274	395	1,321	1,254	67	5%
택지개발사업-24	638,548	97-04-14	03-04-30	03-12-31	2,207	2,452	245	1,056	1,396	1,321	75	5%

보여준다.

또한, 휴지일수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추석 7일, 설 7일, 하기휴가 3일을 적용하였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영향으로 건설현장에서도 건축현장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은 현장이 많으나 토목현장의 경우는 작업중지시 발주기관에 중지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점과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일 작업중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표8. 작업일보 분석결과에서 나타나 있다. 상기의 보정일수 조사결과는 표10과 같다.

공기산정모델의 공기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게 되면 표12와 같으며, 택지개발사업-23의 모델공기(I) 계산 예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모델공기(I)} &= (720+70*2.7)+72*2.52+32*2.52 \\ &+32*0.5*2.52+17*2.52 \\ &= 1,254 \text{일} \end{aligned}$$

택지개발사업-23은 566,545평으로서 30만평을 27만평 정도 상회하므로 10만평 당 70일 추가일수 보정을 위해 2.7배를 곱하였으며, 자연환경요소 보정은 사업규모별로 산정된 순공사기간

이 919일 이므로 2.52년을 각각 곱해 주었다.

모델의 검증대상이 되는 총 24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2개 현장을 제외한 22개현장이 모델의 공기산정결과 대비 ±5% 범위안에 들었으며 이는 정확도 91.6%로 모델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도 90%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검증 프로젝트의 수가 다소 적고 택지개발사업에 국한된 점은 있지만 공기산정모델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 5. 결 론

공공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그동안 건설관행으로 여겨져 오던 예정공사기간 산정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자연환경요소를 주로 다루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발주전 사전준비사항과 함께 지역적인 보정요소와 자연환경보정 요소를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로 모형화하여 공사발주시 과학적인 예정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은 예정공사기간 산정모델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설공사 발주시 예정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절차기준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정공기 적정성 검토기능과 공기산정자료의 공개기능을 두어 시공중 공기연장

과 관련한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사기간산정모델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하여 향후 보다 많은 자료의 조사를 통한 세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며 발주관청의 적극적인 도입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강인석 외4인, [공사일정상의 외부리스크를 고려한 예비비 및 예비공기 산정],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00.9
2. 공사계약일반조건, 1999.9.9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2.
4. 구해식 외1인, [건축공사의 기후요소에 대한 공기산정 방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11
5. 기상청홈페이지 <http://www.kma.go.kr/index.jsp>
6. 손창백 외2인, [지하철공사에 있어 공기증가가 공사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9.6
7. 신종웅 외1인, [지하철공사 공정산정 기준분석], 대한 토목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6
8. 최인환 외1인, [정성적 요소를 고려한 공사기간산정], 건설기술연구소논문집, 1999.12
9. 한국토지공사 단지조성설계 및 적산기준, 2004.

논문제출일: 2005.07.12

심사완료일: 2005.11.07

## Abstract

On public constructions, that the first planed projects delay than the scheduled completion day occurrence frequently because gap between the scheduled construction durations and the actual construction durations. These facts connect with not only problems of the construction during as the construction delay but also brought about the distribution costs increase as the failure of facility use plan and the people discomfort weight, failure of the production and the supply using facility then tremendous loss of each part etc. For reduce these loss, it must improve accuracy of the scheduled construction duration estimating when it order. This study try contribute to a successful manage of public project and reduce the construction duration extension frequent of the construction during, and then ensure the suitable construction duration by present the estimation model of the scheduled construction duration that include the construction duration correct element using as an index on the scheduled construction duration estimation.

**Keywords :**the scheduled construction duration, the estimation procedure model of the construction duration, duration extension, the construction duration correct element